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의 안 번 호	409
------------	-----

제출년월일 : 1994년 12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현행 충청북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2개의 조례중 조세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 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도세를 면제하고, 상이률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안 제2조제3항)
- (2)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3조)
- (3)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함.(안 제4조)
- (4)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5조)

(5)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지구안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6조)

나. 사회교육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1)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7조)

(2)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건설기계·선박·입목 및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8조)

다.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1) 시내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9조)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년간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수입금액을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함. (안 제10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경감함 (안 제11조)

(4)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12조)

라.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1)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등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제1항)

- (2)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14조)
- (3) 주택조합이 건축한 85제곱미터이하의 조합주택과 동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15조제1항)
- (4) 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안 제13조2항 및 제 15조 제2항)
-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개발사업계획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16조)
-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17조)

마.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 (1) 농공단지안에서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8조)

- (2) 주택개량사업·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증합개발사업을 위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제1항)
- (3)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분산농지집단화사업 및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제2항)
- (4)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제3항)
-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30% 감면함 (안 제20조)

바.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 (1) 도시가스사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3조)
- (2)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광산근로자용 사택·목욕탕·독서실·회관 및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22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
- 기타참고자료 : 별첨
- 조례 적용시한 : 1997. 12. 31